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 용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2호
- 나. 제안자 : 유용의원 (찬성의원 11명)
- 다. 제안일자 : 2017년 8월 21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8월 22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 상에 지원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해당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시의 공정무역지원 현황

-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위해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자치구와 민간 공정무역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시는 2016년 세계 공정무역의 날 페스티벌 개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연구, 공정무역 교실을 조성하는 커뮤니티 사업 등에 3억 8천만원,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4개 자치구에 1억원 등 총 4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공정무역단체 및 자치구 사업비 지원에 5억 3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사무관리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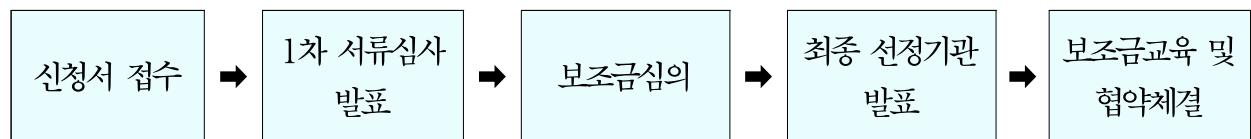
〈서울시 공정무역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세부내역
사무관리비	-	-	14,500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647,000	383,000	383,000	공정무역단체 지원 -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 사업비 지원 - 공정무역 주간 캠페인 사업비 지원 - 공정무역 홍보 및 구매촉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00	150,000	자치구 공정무역 사업비 지원
계	647,000	483,000	547,500	

- 시의 공정무역단체 지원사업은 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체의 장이 시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의 지원서류를 제출한 뒤, 1차 합격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대상기관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공정무역 지원 단체 선정 절차〉



- 시는 선정된 단체와 자치구에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시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및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지원 종료 후에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지원 대상의 선정 및 보조금의 교부에 관련된 사항은 동 조례 제25조¹⁾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있음.

다. 규칙제정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례상에 규정할 수 없고,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하위 규정인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일정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규칙을 제정·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된 지 약 5년이 지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규칙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는 현행 조문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 따라서 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 및 윤리적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정무역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지원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시행규칙

1)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향후에도 조문상 관용적으로 규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후 빠른 시일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임.